

[변경 대비표]

1. 펀드명 : 우리하이플러스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2. 효력발생일 : 2019.12.05

3. 정정사유

- ① 부책임운용역 삭제(이지현)
- ② 모투자신탁의 부책임운용역 삭제(이지현)
- ③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④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4. 투자설명서

구분	정정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	-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	-
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용역 삭제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이지현 -	-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내역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업데이트	이지현 이지현 -	- -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의 주요투자대상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용어변경	전자단기사채	단기사채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2) 상환금등의 지급	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			

항 라. 운용자산 규모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	-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 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5) 투자신탁의 합병 ④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 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5) 투자신탁의 합병 ④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전자등록기관 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 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5.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정정사유	변경 전	변경 후
투자비용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	-
투자실적추이(연평균 수익률)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	-
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용역 삭제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이지현 -	-

6.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사유	변경(전)	변경(후)
제2조(용어의 정의)	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신설>	9. “전자등록기관”이라 함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
제9조(수익권의 분할)	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제14조(수익자명부)	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기관
제35조(상환금등의 지급)	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④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생략>-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략>-발송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이하 동일>-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략>-발송한다.